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기업을 사랑합시다.”

# 과업지시서

과업명	여수 오천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운행대행 용역
-----	----------------------------------

2024. 1.

# 근로자 통근버스 운행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 1 | 과업 개요

1. 과업명 : 여수 오천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운행대행 용역
2. 과업목적 :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출퇴근 교통편의 지원을 통한 입주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기업경쟁력 강화
3. 과업대상 : 여수 오천 일반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4. 과업내용
  - 가. 용역기간 : 2024. 3. 4. ~ 2024. 12. 31.
  - 나. 운영형태 : 여수·여천권 ⇒ 여수 오천 일반산업단지 출·퇴근 노선버스 방식
  - 다. 시행주체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 라. 차량규격 : 45인승 대형버스
  - 마. 차량연식 :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이내 차량
  - 바. 운행대수 : 5대
    - 오천일반산업단지 행 : 5대(5개 노선)
  - 사. 운행횟수 : 1일 10회(출근 5회, 퇴근 5회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대체공휴일(미운행), 임시공휴일(운행)**
  - 아. 총 소요 예상거리(1일) : 약 150km
    - 오천일반산업단지 행(5대) : (출·퇴근)**※ 탑승수요를 고려하여 총 소요 예상거리는 변경될 수 있음**
  - 자. 운행노선 및 시간 : 붙임 운행노선 및 시간표 참조

## 2 | 시험운행

1.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에 앞서 대상노선에 따라 시험운행을 실시하여 운행거리, 정차지점, 운행시간 등을 점검·습득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험운행은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요구하는 방식을 따르며, 노선 및 정차 지점, 운행시간이 확정된 이후에는 계약상대자는 운행차량 및 운전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단, 운행차량 및 운전자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여수상공회의소에 필히 통보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및 운전자를 사전 통보없이 3회 이상 변경할 경우 다음해 입찰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3 |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 본 계약에 의한 운행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
2. 운행차량은 출발시간 10분 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확정된 노선 및 시간표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임의결행 금지 및 기점에서 정시 출발(지연 및 조기출발 금지)**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운행을 결행하거나 지연 운행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대체차량을 즉시 투입하고 여수상공회의소에 즉시 사유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4. 운행차량은 탑승자 편의 및 사업의 홍보를 위해 차량 전면 LED 표기 및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제작한 홍보 스티커를 전면과 측면에 부착한 상태에서 운행하여야 하며, 내부에 운행노선도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5. 이용 수요에 맞추어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여수상공회의소의 처리방침에 따라야 한다.
6. 통근버스 운행업체는 차량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여 통근버스 차량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통근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표 관리 업무, 통근버스 운행 관련 민원 대응 및 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매월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탑승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7. 통근버스 운행업체는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실시간 차량위치 및 탑승인원 확인을 위해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설치하는 통근버스 내 차량관리시스템(GPS 단말기 및 리더기) 설치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4

### 운행차량의 조건

---

1. 차량연식 :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이내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정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2. 운행도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 비상용 소화기 및 망치가 모두 장착되어야 한다.
4. 운행차량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 5

###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3. 현지 운행상황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여수상공회의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여수상공회의소의 지시에 의해 운행한다.
4. 운전자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탑승자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아야 한다.
5. 이동시각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6. 이동 시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한다.
7. 운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적성정밀검사에 적합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8. 운전자는 탑승자 전원 안전띠 착용 시 운행을 시작하고,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운행하는 일, 신호위반, 과속 등 난폭운전 금지를 철저히 준수한다.

1. 본 과업은 도비, 지방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정책변화에 따라 도비, 지방비의 중단 또는 취소 결정 시 과업이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도비, 지방비의 지원시기에 따라 사업비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
2. 사업비의 신청은 청구서와 증빙서류(탑승현황 등)를 첨부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제출된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사업비를 월별 지급하도록 한다. 단, 운행기간이 1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수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천재지변을 제외한 운전자의 무단결근,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결행 및 지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여수상공회의소는 아래의 금액을 감액한 후 사업비를 지급한다.
  - 1회 결행 시 : 서면(공문) 경고
  - 누적 2회 결행 시 : 5일 이용요금 감액
  - 누적 3회 이상 결행 시 : 당월 이용요금 50% 감액

※ 차량고장, 결행 및 지연운행 등으로 통근버스 이용 불가시 당일 탑승 근로자들은 대중교통(택시)을 이용한다, 단 이용요금은 전액 실비로 청구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청구 즉시 지불한다
4. 여수상공회의소는 본 과업수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차량, 노선변경 등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다음과 같은 경우 여수상공회의소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사업비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에 있어서 여수상공회의소의 정당한 요구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 용역내용이 수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때
  -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6. 위 5항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여수상공회의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여수상공회의소에 전체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세부적인 운영방침은 붙임 「통근버스 운행대행 용역 계약특수조건」을 참조한다.
8. 이 과업에 관한 소송은 여수상공회의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7 | 관계서류 제출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아래의 서류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생략)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록(면허)증 사본 1부
4. 차량등록증 사본 1부(운행 차량별)
5.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운행 차량별)
6.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1부
8.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9. 첨부계약이행서약서 1부

※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붙 임 : 가. 통근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표 1부

나. 통근버스 운행대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1부.